

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 1619 호
- 다. 제출일자 : 2020. 6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6. 9.

2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의2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
 - 발행대상 : 재난관리기금 조성
 - 발행금액 : 4,500억원
 - 필 요 성 : 코로나19 긴급 대응 및 향후 재난(수해 등)에 대한 응급복구와
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취약계층 지원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 및 제11조의2,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- 「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」 개정(안전총괄과)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안건은 코로나-19 긴급 대응 및 향후 발생 가능한 재난(수해 등)에 대한 응급복구와 코로나-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1)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(4,500억원) 발행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임.
-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은 ‘공유재산의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’, ‘재해예방 및 복구사업’과 같은 투자성 사업과, ‘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

-
- 1)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.
1.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
 2.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
 3.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
 4. 지방채의 차환
 5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
 6. 명예퇴직(「교육공무원법」 제36조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,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④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.

의 보전', '지방채의 차환 등'에 한하여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.

- 따라서 이번 지방채 발행과 같이 코로나-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·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경상적 지출과 재난관리기금의 부족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의 발행이 불가능하기에,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제3항2) 즉,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(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)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”는 규정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근거한 법정 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임.

■ 코로나-19 대응 서울시 예산 지출 현황

- 서울시는 코로나-19와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, 예비비 지출,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, 재난관리기금 사용, 재난안전특별교부세, 간주처리 국고보조금, 특별교부금 등으로 5월말 현재까지 총 4조 8,602억원(기금전출금 중복계상 5,718억원)을 지출하고 있음.

2) 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·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(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)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④ ~ ⑥ (생략)

〈코로나-19 대응 관련 서울시 지출 현황〉

- 1회 추경 : 7,348억원
 - 민생안정지원 5,868억원, 피해업계 지원 835억원, 시민안전 강화 645억원
- 2회 추경 : 2조 8,379억원
 - 민생안정 지원 2조 5,379억원, 자치구 조정교부금 3,000억원
- 예비비 집행 : 192억원
-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: 1,450억원
-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: 8,109억원
 - 방역물품 구입, 소상공인 생존지원, 긴급생활비(1,083억원) 등
-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: 4,402억원
 - 격리시설·생활치료시설 운영지원, 긴급생활비(4,316억원), 방역물품 지원 등
- 재난안전특별교부세 : 88억원
 - 방역물품 구입, 선별진료소 운영, 감염증 확산 방지 활동 비용 등
-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: 4,035억원
 - 긴급재난지원금, 방역물품 지원, 입원치료비 등
- 특별교부금 : 317억원
 - 방역물품 구입, 입국유학생 관리, 약국 인력지원 등

- 한편, 6월 초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, 코로나-19 대응사업이 108건에 8,127억 12백만원이고 그 외에 평상시 재난예방사업 116건 936억 82백만원과 '19년도 이월사업 5건 15억 2천만원을 집행하여 총 9,079억 15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, 이로 인해 현재의 기금(재난계정) 잔액(적립총액)은 470억 66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임.

[표] 2020년도재난관리기금 차수별 지출내역

구분	금액(백만원)	주요 내용
계	812,712	코로나19 대응
	93,682	'20년 재난예방 사업

'20.1.28.(1차)	16,817	대중교통시설, 복지시설, 체육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, 홍보활동 지원
'20.2.04.(2차)	2,882	방역물품 구입, 감염병 진단장비 및 시약, 유치원 및 학교 지원 등
'20.2.17.(3차)	2,975	대중교통시설 방역비 지원, 구급대원 방역장비 구매 지원 등
'20.3.03.(4차)	35,948	대중교통·사회복지시설 방역비 지원, 감염병전담병원 응급병상 확보
'20.3.12.(5차)	10,084	- (코로나 긴급대응) 천 마스크 제작, 이동식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
	92,049	- (시설사업) 방재시설 보수·보강 등
'20.3.18.(6차)	33,589	해외마스크 구매, 방역물품 구매 비원, 잠시멈춤 캠페인 지원 등
'20.4.09.(7차)	826	장애인콜택시, 대중교통 방역물품 지원,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지원 등
'20.4.23.(8차)	16,618	온라인 등교 개학 지원, 해외입국자 특별수송대책 지원 등
'20.4.24.(9차)	3,977	선별진료소 검사비 지원, 방역물품 지원 등
'20.5.08.(10차)	250,000	소상공인 생존지원금
'20.5.12.(11차)	108,300	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
'20.5.19.(12차)	325,886	소상공인 생존지원금
'20.6.02.(13차)	3,025	- (코로나 긴급대응) 방역물품 지원, 해외입국자 수송지원,
	1,633	- (시설사업) 방재시설 보수·보강 및 제설자재 구매
'20.6.08.(14차)	1,785	청사 및 소극장 방역,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지원 등

○ 이는 2020년 법정 의무예치금 2,602억 48백만원³⁾에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법정 의무예치금 일정부분 회복과 코로나-19 사태 장기화 및 하절기 풍수해 등 추가적인 재난 발생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대규모 재난관리기금 긴급수혈이 절실한 상황임.

3) 의무예치금: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 75조제2항)

$$\Rightarrow 1,734,984\text{백만원} \times 15\% = 260,248\text{백만원}$$

[’03년 이후 최저적립액 현황]

(단위: 백만원)

합계	'03~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
1,734,984	1,080,681	86,532	90,708	100,500	113,901	126,742	135,920

※ 최저적립액: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

■ 2020년 서울시 지방채 발행현황
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0조4)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여력 및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'20년 서울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조 7,598억원(기본한도액 1조 5,572억원, 별도 한도액 1조 2,026억원)임.

[표]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

구 분		시·도,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	시·군·구
총 한 도 액	기본 한도액	【경상일반재원 - (채무잔액 + BTL 임차료 + 우발채무 50%)】 × 10%	
	대도시 특례	기본한도액의 10% 추가	
	별도 한도액	지역개발채권·도시철도채권 발행액 + 차환액 + 지역일자리사업 +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	

※ 경상일반재원=일반재원-임시적 세외수입 【일반재원=지방세+세외수입+지방교부세+조정교부금】

※ BTL :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

- 4) 제10조(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)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 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. 다만,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1.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
 2.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
 3.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
 4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, 채무상환일정, 재정부담상황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정기구(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공동 행정기구를 포함한다)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가로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제2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더한 금액은 해당 시·도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.

- 그러나, 서울시는 당초 '20년 지방채 발행에 대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제3항5)에 따라 발행한도를 2,665억원 초과하는 3조 263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행정안전부 승인('19.10.30.)을 득하였으나, 최종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2조 9,996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음.
- 이에 서울시가 현재까지의 지방채를 발행한 총 금액은 모집공채 7,300억원과 도시철도공채 3,378억원을 합한 총 1조 678억원인 것으로 파악됨.

〈지방채 발행액 : 1조 678억원〉

- 모집공채 : 3개 사업, 7,300억원

연번	발행사업	발행일	발행금액
1	재개발임대주택 매입	5.22	2,400억원
2	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	5.22	2,800억원
3	다가구, 신혼부부, 공공원룸 매입	6.4	2,100억원

- 도시철도공채 : 3,378억원(5월말 기준)

■ 금회 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규모(4,500억원)에 대한 의견

- 이처럼 서울시는 '20년 지방채 발행 승인분(2조 9,996억원)이 발행한도액(2조 7,598억원)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지만 코로

5)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①·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,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④ ~ ⑤ (생략)

나-19와 풍수해 대비 등을 위해 부득이 본 동의안을 통해 재난관리기금(재난계정)에서 지방채 4,500억원을 추가 발행하려는 것임.

-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에 지방채 한초 초과발행에 대해 협의 요청(재정균형발전담당관-6116호)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6월 8일 재난관리기금 조성 명목으로 4,500억원의 초과발행을 승인해 줌.
- 서울시에 따르면 금회 발행코자 하는 기금 조성 지방채 4,500억원은 코로나-19 확산방지 및 재난(풍수해 등) 응급복구비로 1,000억원, 코로나-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으로 1,500억원, 코로나-19에 따른 취약계층 긴급지원으로 2,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임.
- 한편, 서울시가 금번 제295회 정례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1,083억원을 별도 적립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,
- 이는 그 동안 코로나-19 대응에 긴급히 지출한 재난관리기금(재난계정)에 대한 보전성 적립 차원이며, 따라서 1,083억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갈된 법정 의무예치금을 일부나마 회복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인바,
- 금년도 만일의 풍수해 등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 지원 등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1,083억원이 아닌 본 동의안의 4,500억원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담보되어야 할 것임.

- 이는 재난관리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여겨지고,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4,500억원 지출 계획 중 ‘코로나-19 확산방지 및 재난응급 복구비’ 명목의 1,000억원에 대해서는 순수 풍수해 등의 재난응급복구비로만 사용하고 코로나-19 확산방지는 나머지 금액에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참고로, 최근 5년간 서울시 채무액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, ‘19년 채무액이 급증한 이후 ‘20년 4월말 기준 서울시 채무액이 이미 5조 6,012억원에 달하며, 이번 지방채 발행규모 4,500억원은 현재 채무액의 8%에 해당되므로 그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.

[표] 서울시 채무현황(2015~2019년)

(단위:억원)

구 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
채 무 액	34,230	34,770	37,451	38,356	55,713

■ 종합의견

- 금년 코로나-19 대응에 따른 이례적인 재난관리기금(재난계정) 지출로 기금잔액이 법정 의무예치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황까지 도달하였으며, 코로나-19 사태의 장기화 및 수해 등의 추가적인 재난 발생상황을 감안할 때 재난관리기금의 추가 조성은 불가피해 보임.

- 다만, 금번 지방채 발행이 당초 채무관리계획 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채무규모, 상환일정, 금리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동의안이 의결되더라도 실제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,
- 발행한 기금에 대해서는 최소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임.
- 또한, 차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안 수립 시에는 부족한 법정 의무예치금 만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나머지 기금사업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- [붙임] 1.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사업설명서
- 2. 서울시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 협의 결과 공문
 - 3. 2020년 지방채 발행승인내역

[붙임 1]

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

1. 규 모 : 4,500억원

2. 대상사업

- 코로나-19 확산방지 및 재난 응급복구 : 1,000억원
- 소상공인 지원 : 1,500억원
- 취약계층 긴급지원 : 2,000억원
- ※ 세부내용 : 붙임 참조

3. 추진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의2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5조의2

4. 기타사항

- 「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」 개정 추진
 - 조성 대상 재원에 지방채 포함하는 조항 신설
-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각각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

-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(6.10~6.30) 상정

코로나-19 확산방지 및 재난(수해 등) 응급복구 사업

1.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

- 코로나-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2020년 재난(수해 등)에 대한 응급복구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 확보

2. 지방채 발행계획

단위 : 억원, %

발행액	차입선	연리	상환기간	상환재원	발행방법	발행시기
1,000	모집공채	1.4	5년	전액시비	증권차입	2020

※ 발행시 변동 가능

3. 추진경위

-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('19.10.14. 응급복구)
-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계획 수립('20.5.8.)에 따른 자금소진
-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확보 요청(행안부, '20.3.23., 5.19.)

4. 사업내용

- 기간 : 2020.6. ~ 12.
- 대상 : 코로나-19 확산방지 및 재난(수해 등) 응급복구
- 내역 : 코로나-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재난(수해 등) 피해시설, 산사태 복구, 하천제방 보수,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등 응급복구
 ※ 民·官·軍·警의 복구인력 및 장비 등 효율적 지원

◆ 2011년 재난 긴급복구비 : 1,493억원 지원 - 산사태 복구 및 예방 : 480억원 - 하천제방 보수 및 하수관로 정비 : 501억원 - 도로사면 보수, 저류조 설치,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등 : 323억원

5.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

- 코로나-19 확산방지 및 재난(수해 등)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반 시설의 응급복구로 시민안전 확보

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사업

(재난관리기금)

1.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

-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

2. 지방채 발행계획

단위 : 억원, %

발행액	차입선	연리	상환기간	상환재원	발행방법	발행시기
1,500	모집공채	1.4	5년	전액시비	증권차입	2020

※ 발행시 변동 가능

3. 추진경위

- 소상공인 긴급 간담회('20.4.6. 현안검토회의)
- 전문가 및 민생경제자문단 회의('20. 4.6~22. 총8회)
-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계획 발표('20. 4. 23.)
-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계획 수립('20.5.8.)

4. 사업내용

- 기간 : 2020.6. ~ 12.
- 대상 :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
- 내역 : 사업장당 70만원 씩 2개월 지원

5. 사업계획

- 신청서 접수 : 온라인(5.25.~), 오프라인(6.15.~)
- 지원금 지급 : 5.28.~7.31.

6.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

-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도산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저점에서 버틸 수 있는 생존자금 지원
-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긴급 지원으로 피해주민의 위로를 통한 재난극복에 도움

취약계층 긴급지원 사업

(재난관리기금)

1.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

-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위기 상황 해소
-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확대 방지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확대

2. 지방채 발행계획

단위 : 억원, %

발행액	차입선	연리	상환기간	상환재원	발행방법	발행시기
2,000	모집공채	1.6	10년	전액시비	증권차입	2020

※ 발행시 변동 가능

3. 사업내용

- 코로나 19대응 서울형 재난 긴급생활비
 - 대상 : 기준소득 100%이하 전 가구 227만 가구
 - 내용 : 가구당 30만~50만원
 - 시기 : 2020.6. ~ 12.

4.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

- 취약계층 대해 코로나19의 타격으로부터 경제적 보호

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.



행정안전부



수신 서울특별시(재정균형발전담당관)

(경유)

제목 서울시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 협의 결과 회신

1.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-6116(2020.5.21.)호 관련입니다.
2. 지방채 발행 한도초과 협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 결과를 통보합니다.
 - 한도초과 협의 대상 및 규모 : 1건, 4,500억원

지자체	발행대상	협의금액	차입자금	비고
서울특별시	'재난관리기금 조성'을 위한 지방채 발행	4,500억원	모집공채 (민간)	기본한도 (15,572억)

- 협의결과 : 조건부* 협의
 - * ①초과발행 시 세부(연도별) 상한계획 수립, ② '재난관리기금 조례' 개정 및 지방의회 동의(협의) 필요, ③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, ④예산 대비 채무비율 25% 이내로 관리. 끝.

행정안전부장관



주무관 김영규 행정사무관 장강혁 재정정책과장 이방무 전경 06/08

협조자

시행 재정정책과-3158 (2020.06.08.) 접수 재정균형발전담당관-6791 (2020.6.8.)
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(어진동) 행정안전 / <http://www.mois.go.kr>
 부 별관 603호
 전화 044-205-3717 /전송 044-204-8964 / kyk1108@mail.go.kr / 비공개(5,6)

서울시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 협의 결과

▶ 서울시 지방채 발행 관련 한도 초과에 따른 행안부 협의 결과
 ⇒ 심의위원회를 통해 **4,500억원 '조건부* 감액 협의' 결정**

□ 협의 요청 내용

○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 초과 발행분 5,000억원에 대한 협의

지자체	발행대상	협의금액	차입자금	비고
서울특별시	'재난관리기금 조성'을 위한 지방채 발행	5,000억원	모집공채 (민간)	기본한도 (15,572억)

-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 시 **활용계획**(잠정)

사업내역	발행액	발행방법	상환재원	비고
재난(수해 등) 응급복구 사업	1,500	모집공채	전액시비	5년물(3,000억원), 10년물(2,000억원)
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사업	1,500			
취약계층 긴급지원 사업	2,000			

□ 협의 결과 : 조건부 감액 협의(협의 규모 : 4,500억원)

- (필요성) '코로나19' 추가 대응(취약계층, 소상공인 등 지원) 및 예측 불가능한 재난발생 대비를 위한 '재난관리기금' 조성 필요성 인정
- (감액사유) 최근 10년 내 재난 발생 대응을 위한 기금 활용 최대 규모가 약 1,400억원(최근 700~800억 수준)이므로,
 - 예상 예치금 잔액, 기타 예비비 활용 가능성 등 고려하여 당초 발행 계획 1,500억원을 1,000억원 수준으로 조정(500억원 감액)
- (초과발행 조건) 이하 조건 이행을 전제로 협의
 - '재난관리기금 조례' 상 기금 조성 방법으로 지방채 명시(조례 개정) 및 발행 시 지방의회 동의(의결) 등 충분한 협의 필요
 - 초과발행 시 구체적 상환계획 수립
 - 지방채 발행 내역 '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', 예산대비 채무비율 25% (재정분석 지표) 이하 관리 등 건전성 관리 병행

[붙임 3]

2020년 지방채 발행승인내역(본 예산 기준)

(단위 : 백만원)

연번	실·본부·국	사 업 명	발 행 액(승인분)
총 계			2,999,600
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			999,800
1	도 시 교 통 실	도시철도 공채 발행	772,600
2	도시기반시설본부	신림선 경전철 건설	87,200
3	도시기반시설본부	진접선 차량기지 건설	62,500
4	도시기반시설본부	동북선 경전철 건설	77,500
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			158,600
5	안 전 총 괄 실	동부간선도로 확장(녹천교~의정부시계)	86,900
6	도시기반시설본부	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	4,000
7	도 시 교 통 실	광역철도 건설비 부담	61,200
8	도 시 교 통 실	진관 제2공영차고지 건설	6,500
주택사업특별회계			865,000
9	주 택 건 축 본 부	임대주택 공급	865,000
도시개발특별회계			902,400
10	도 시 교 통 실	세종대로 도로공간 개편	7,500
11	도 시 교 통 실	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	2,500
12	문 화 본 부	풍납토성 복원 보상	23,600
13	안 전 총 괄 실	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	57,000
14	안 전 총 괄 실	동부간선도로 확장(월계1교~녹천교)	19,400
15	안 전 총 괄 실	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	41,200
16	안 전 총 괄 실	율곡로(창경궁앞) 구조개선	4,000
17	안 전 총 괄 실	사당로 (구)범진여객~술밭로입구 도로확장	4,000
18	안 전 총 괄 실	월드컵 대교 건설	65,000

연번	실·본부·국	사 업 명	발 행 액(승인분)
19	안 전 총 괄 실	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(올림픽대교 남단)	11,000
20	안 전 총 괄 실	성산대교 성능구조 개선	34,000
21	안 전 총 괄 실	서울제물포터널 건설	8,000
22	안 전 총 괄 실	신림~봉천터널 건설	26,000
23	안 전 총 괄 실	장기미집행 도로보상	92,000
24	안 전 총 괄 실	양재대로 구조개선	19,300
25	안 전 총 괄 실	안양교 확장	14,500
26	안 전 총 괄 실	남부순환로(개봉사거리) 평탄화	10,000
27	도 시 재 생 실	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	13,100
28	푸 른 도 시 국	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	430,000
29	물 순 환 안 전 국	강남역 일대 침수방지	18,000
30	경 제 진 흥 실	가락동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	2,300
균형발전특별회계			44,300
31	경 제 진 흥 실	관악창업센터 조성	1,500
32	문 화 본 부	서울공예박물관 건립	25,000
33	문 화 본 부	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	2,500
34	문 화 본 부	아동 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지원	3,000
35	평 생 교 육 국	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	5,300
36	문 화 본 부	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	4,000
37	문 화 본 부	삼청각 리모델링	3,000
일반회계			29,500
38	여 성 가 족 정 책 실	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	23,500
39	경 제 정 책 실	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	6,000